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289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4. 10. 16.
4. 회부일자 : 2024. 10. 18.

## II. 제안이유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명확화 및 주차장 사용료의 감면 기준 완화 등 범위 확대
- 이용자 및 시민의 주차장 이용 혜택 및 편의 향상
- 한자어 및 관용적 표현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정비하여 내용 이해도 제고

## III. 주요내용

1. 【내용 변경】 근거 법령의 명칭 개정 적용과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한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규정 내용 변경(안 별표)
  - (관련 법령 개정) 사용료 감면 근거 법령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명 적용
  - (친환경·저공해 정책 부응) 충전을 목적으로 주차장에 출입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일정 시간 동안의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

- (저출산 해소 방안 확대) 두 자녀 이상 가정(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던 사용료 할인율을 상향 규정(30% ⇒ 50%)

## 2. 【용어 정비】 한자어 및 관용적 표현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정비(안 제7조, 제8조 및 별표)

### IV. 참고사항

#### 1. 관계법규 등 [별첨 8]

-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 「주차장법」 제2조, 제19조, 제19조의3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 2.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3]

#### 3. 협의: 감사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4. 기타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별첨 1]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 [별첨 2]
- 입법예고(2024. 9. 12. ~ 10. 2.) 결과: 의견 없음 [별첨 4]
- 교육규제심사: 대상 아님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별첨 5]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제외 통보확인서 [별첨 6]
- 학생인권영향평가: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별첨 7]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심혁보)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289호로 제출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의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용료의 명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한편 용어의 정비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1)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확대(조례안 [별표] <비고> 6.)

- 금번 개정조례안은 [별표] <비고> “6.”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간별 감면사항을 신설하고(안 [별표] <비고> 6-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률을 50%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먼저 전기자동차의 경우 종전 [별표] <비고> “6. 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어 사용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었으나,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 사용을 위해 입차하는 경우 서울시와 달리 별도의 면제조항이 없어 주차장 사용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6년 제268회 정례회에서 전기자동차의 경우 공영주차장 전기충전시 1시간 이내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부터는 50%를 할인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주차

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sup>1)</sup>하였는바,

조례간 적용의 형평성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률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부설주차장의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두 자녀의 경우 30%, 세 자녀의 경우 50%의 사용료 감면을 받아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제316회 임시회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소 측면에서 자녀 수에 차등 없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인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하도록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sup>2)</sup>하였습니다.

이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간 적용 형평성 및 다자녀에 대한 혜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조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기타

- 동 개정조례안은 [별표] <비고> “6. 바”에 규정되어 있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1)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열, 박진형 의원 외 22명 공동발의(2016.6.10.제출), 원안가결(2016.6.27.)

(제안 요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지정, 요금감면 및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과 주차요금 감면 기준 등을 정하여 시민의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충전기 설치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향 의원 외 34명 공동발의(2023.2.6.제출), 원안가결(2023.3.10.)

(제안 요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의 사업에 반영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는 다자녀 혜택 대상이 기존 3자녀에 머물러 있어, 지원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이에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3자녀→2자녀)을 변경하고자 함.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sup>3)</sup>로 하고, 안 제7조 3호의 ‘적재한’을 ‘실은’으로, 안 제8조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별표] <비고>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각각 수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위법령의 명칭 개정사항과 용어의 정리는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 (2180-8263)	입법조사관	이가영 (2180-8270)	입법조사관	이현주 (2180-8272)
----------	--------------------	-------	--------------------	-------	--------------------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83호, 2021. 1. 5., 일부개정] 제명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